

【논문】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인가?

윤 보 석*

【주제분류】 심리 철학

【주요어】 심적 인과, 과잉 결정, 배제 논변, 김재권, 폐쇄성 원리, 양립가능론,

【요약문】 심적 사건이 물리 세계에 아무런 인과적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많은 철학자들이 과잉 결정 모델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이 아니며 과잉 결정일 필요도 없다.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으로 보고자 하는 동기는 배제 논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데, 과잉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배제 논변을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 아니더라도 비환원주의자는 심적 사건이나 속성의 인과적 효력과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가 있다.

I. 서론

최근 심적 인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과잉 결정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수의 철학자들이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의 한 예로 간주하였다.¹⁾ 그러나 한편으로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으로 간주하는

* 이화여대 철학과

데 회의적인 철학자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재권은 단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두 개의 충분한 원인을 가지는 과잉 결정의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도로 이상하다”고 말한다.²⁾ 필자는 김재권과 마찬가지로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애당초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의 한 사례로 간주할 강력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통상 철학자들이 심적 인과를 과잉 결정으로 보고자 하는 동기는 김재권 등에 의해 제기된 배제 논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데, 필자는 과잉 결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배제 논변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과잉 결정에 호소하는 것이 배제 논변을 반박하는 적절한 방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과잉 결정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음 세 논제에 주목하자.

- * 심적 인과의 실재성: 심적 성질 혹은 심적 사건은 물리적 세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원리: 물리적 사건에 대해 항상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존재한다.
- * 심적 성질 혹은 심적 사건의 독립성: 그들이 물리적 성질 혹은 물리적 사건과 어떤 연관은 있더라도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 세 논제를 다 받아들이는 입장을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이라 부른다. 배제 논변의 결론은 양립가능론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

1) 예를 들어, Jonathan Schaffer (2003), “Overdetermining Causes”, *Philosophical Studies* 114. Theodore Sider (2003), “What is so bad about overdetermina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Thomas Crisp and Ted Warfield (2001), “Kim’s Master Argument”, 2001, *Nous*, 35:2, 304–316. Eric Marcus (2005), “Mental Causation in a Physical World”, *Philosophical Studies*, Vol. 122, No. 1.

2) Jaegwon Kim (1993), *Supervenience and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47.

이다. 배제 논변을 서술하는 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i) 만일 양립가능론이 정합적이면,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다.
 - (ii)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이 아니다.
- 따라서, 양립가능론은 비정합적이다.

이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면 위의 세 논제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심적 인과의 실재성 혹은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를 포기한다면 비환원주의를 보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환원주의를 보전하는 것은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 이긴 승리와 같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김재권은 비환원주의를 구석으로 내 몰아 왔다.

물론 양립가능론자들은 위 논증의 결론을 거부한다. 그러나 위의 논증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 전제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해야만 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한 선택은 (i)을 받아들이고 (ii)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잉 결정에 호소하여 배제 논변의 건전성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고 유일한 접근도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즉, (ii)를 받아들이고 (i)을 부정하는 대안을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II. 과잉결정에 대한 몇 가지 비판

과잉결정에 대한 우려는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적절성을 따져 보기로 하겠다.

A. 과잉 결정은 우연이나 계획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인용한 대로 김재권을 위시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이 과잉 결정되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한다. 만일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과잉 결정이 있다

면, 과잉 결정이 무척 편재하게 되는데 과잉 결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잉 결정은 불가능하지 않으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낮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과잉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상 언급되는 사수 두 명이 정확히 동시에 사형수를 죽이는 경우나 혹은 돌 두개가 유리창을 동시에 깨는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반발이 이해가 된다. 돌1과 돌2가 동시에 유리창을 맞출 때, 돌1도 원인이 아니고 돌2도 원인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분명 그것들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이다. 돌1이 원인이고 돌2는 아니라거나 혹은 돌2가 원인이고 돌1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돌1과 돌2와 원인 제공에 있어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돌1과 돌2가 각각 유리창 파괴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는 과잉 결정의 사례가 된다.)³⁾ 각 돌이 유리창이 깨어지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원인이 복수인 경우가 과잉 결정이다. 돌1이 유리창을 맞춘 바로 직후에 돌2가 도착했다더라도 이는 과잉 결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 간격이 작다고 해도 일단 돌1에 의해 유리창이 깨어지고 난 후 돌2가 도착하면 이는 과잉 결정이 아니다. 물론 “돌1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이다. 이런 점에서는 과잉 결정과 다르지 않으나, 두 돌이 도착하는 시간차가 있을 경우 과잉 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1과 돌2가 동시에 도착했다더라도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혼자서 유리창을 깰 충분한 힘은 없고 돌이 힘을 합해야 유리창이 파괴된다면 이 또한 과잉 결정이 아니다. 돌1과 돌2가 각각 충분한 원인이고 돌이 정확히 동시에 유리창에 도착할 때만이 과잉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잘 발생할 수 없고 우연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직관에 부합한다.

그럼 왜 양립가능론자는 구태여 심적 인과를 이러한 비직관적인 과잉 결정의 한 사례로 보고자 하는가? 양립가능론을 구성하는 세

3) 돌 A와 돌 B의 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복합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 Jonathan Schaffer (2003) 참조할 것.

논제를 보면 그 세 논제가 과잉 결정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논제에 의해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 논제에 의해 그 물리적 사건이 또한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지며, 세 번째 논제에 의해 그 심적 원인과 그 물리적 원인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따라서, 양립가능론이 과잉 결정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세 논제를 해석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논문 후반부에서 가서 다루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일단 양립가능론이 과잉 결정을 필한다고 보면, 이것이 귀류법에 의해 양립가능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양립가능론자는 과잉결정이 부조리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하나의 대응은 과잉 결정의 경우들을 세분하여 과잉 결정의 모든 경우가 다 두 돌의 경우처럼 비직관적이지는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두 돌 경우의 특징은 서로 독립적으로 날아가서 유리창을 맞추었다는 데 있다. 이는 독립적(independent) 과잉 결정이다. 반면, 두 원인이 서로 의존적인 경우가 가능하다. 이를 테면, 큰 돌 하나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고려해 보자. 좌반구와 우반구 그 어느 하나도 유리창을 깨기에 충분하다고 하자. 큰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었을 때, 좌반구도 원인이고 우반구도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는 과잉 결정인데, 이 경우는 두 원인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의존적(dependent) 과잉 결정이 된다.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도 가게 되어 있다. 의존적 과잉 결정을 고려하면 과잉 결정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만 볼 수는 없다. 과잉 결정은 상당히 편재할 수 있다. 두 원인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둘의 행적이 일치한다. 따라서 심적 인과가 의존적 과잉 결정의 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는 위의 비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심-물간에 수반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수반”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면, 심적 사건은 그것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건이 존재한다.⁴⁾ 만일 심적 사건이 행동을 유발한다면, 그 심적

4) 약한 수반에 따르면, 어떤 세계 내에서 어떤 두 대상도 심적으로

사건과 연관된 신경학적 사건도 또한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경학적 사건이 심적 사건을 필하고 심적 사건이 행동을 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과잉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B. 과잉 결정은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와 상충한다.

인과적 폐쇄성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사건에 대해 그것을 발생하기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존재한다. 이를 행동 인과에 적용하면, 모든 행동 (B)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물리적 원인 (N)이 존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물리적 원인과 별개의 비물리적 원인 (M)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M이 B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M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B가 M과 N에 의해 과잉 결정되어 있다면 M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N이 B를 발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과잉 결정은 M이 진정한 원인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M이 물리적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M이 아니었다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을 초래해야 하는데, 이는 폐쇄성 원리와 상충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과잉 결정 옹호자들은 우선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인과적 폐쇄성원리는 모든 물리적 사건에 대해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물리적 사건에 대해 오로지 물리적 원인만 존재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즉, 물리적 사건에 대해 항상 그것을 발생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비물리적 원인의 존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원리는 물리적 원인이 있기만 하면

다르면서 물리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있는 두 대상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와 물리적으로는 동일하나 정신은 없는 개체들이 존재하는 가능 세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반면, 강한 수반은 서로 다른 세계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수반이다.

되지, 오직 그것만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는 명시적으로 “모든 물리적 사건은 완전한 물리적 인과 역사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Completeness”라고 부르는데 이는 위에서 우리가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라고 부른 것과 동등하다.⁵⁾ 마르쿠스는 Completeness가 전혀 심적 인과에 아무런 위협도 제기하지 않으며, 그런 위협이 제기되는 것으로 철학자들이 잘못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그 원리를 그것보다 강한 “Closure”라고 그가 부르는 원리와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마르쿠스가 말하는 Closure는 “물리적 사건들은 비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이렇게 정의된바 Closure는 당연히 비환원주의, 심적 인과와 정합적일 수 없다.

Completeness로부터 Closure를 도출하려면 모든 사건은 오직 하나의 충분한 원인을 가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잉 결정 반대자들은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과잉 결정 옹호자들이 거부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정해 버리면 선결 문제의 오류가 된다. 마르쿠스는 김재권의 배제 논증이 결국 Completeness로부터 Closure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사이더 같은 과잉 결정 옹호자도 과잉 결정 반대자들이 인과 관계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가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사이더에 따르면, 과잉 결정 반대자들은 인과 관계에 대한 용액 이론(the fluid conception of causation)을 가정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원인이 작동하면 그것이 모든 용액을 다 써버려서 다른 모든 가능한 원인은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인과 관계의 본질상 오직 하나의 충분한 원인밖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사이더는 용액 이론 자체가 바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다.⁶⁾

그러나 김재권은 과잉 결정이 궁극에는 폐쇄성 원리를 포기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그의 논증은 귀류법의 형식을 가진다. 현실 세계에

5) Eric Marcus(2005).

6) Theodore Sider(2003), p.721.

서 B가 M과 N에 의해 과잉 결정되었다고 해보자. 김재권은 N없이 M만 발생하는 가능 세계를 고려한다. 이 세계는 N만 없을 뿐 현실 세계와 모든 다른 면에서 동일하다. 정의에 의해 M이 B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기 때문에 B도 그 세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은 폐쇄성 원리가 N이 없는 근접한 세계에서 파괴된다는 것이다. 김재권은 이러한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N만 제거된 미세한 차이가 세계의 근본 원리의 파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크리슈과 와필드는 김재권의 논증에 대한 한 유효한 반발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우선 강한 수반이 N이 없는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면, N대신 또 다른 어떤 물리적 사건 N'가 발생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강한 수반은 M이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물리적 기반 속성의 예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N'는 B의 원인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N'가 M의 수반 기저이기 때문에, N'의 예화는 M을 결정하고, M은 B가 발생하기에 충분함으로 따라서 N'는 B가 발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N' 덕분에 B가 물리적 원인을 가지게 되어 폐쇄성 원리는 보존된다. 물론, N이 없는 가능 세계에서 강한 수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세계에서 폐쇄성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강한 수반이 성립한다면, 강한 수반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는 법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세계이다. 크리슈과 와필드는 왜 우리가 법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개념해야 하나고 반문한다.⁸⁾

크리슈과 와필드는 김재권 논증의 건전성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위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김재권은 양립가능론이 비정합적임을 보

7) "I do not think we can accept this consequence: that a minimal counterfactual supposition like that can lead to a major change in the world." Jaegwon Kim,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45.

8) Thomas Crisp and Ted Warfield (2001), p.314.

이기 위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한다. 즉, 만일 강한 수반이 성립하면, 양립가능론이 비정합적이고 또한, 만일 강한 수반이 성립하지 않으면, 양립가능론이 비정합적임을 보여서 양도논법에 의해 양립가능론의 비정합성을 도출하려고 한다. 크리슈과 와필드는 위에서 첫 번째 전제가 거짓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만일 강한 수반이 성립하면, 그리고 심적 인과의 실재와 비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인과적 폐쇄성 원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그들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C. 과잉 결정은 심적 사건의 잉여성과 양립가능하다.

양립가능론자들과 그 반대자들 간에 과잉 결정을 둘러싼 공방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위의 두 반론에 대해서는 과잉 결정 옹호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잉 결정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논증이 문제가 있다 해도, 이로 부터 과잉 결정 모델이 적절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과잉 결정 옹호자들은 스스로 어떤 논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이는 과잉 결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와 연관이 있다.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된다면 심적 사건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어떤 물리적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과잉 결정에 따르면 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물리적 사건은 어차피 일어난다. 혹은 어떤 사건의 심적 속성은 그 사건이 심적 속성이 아니었다면 인과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을 어떤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가? 과잉 결정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 유발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유발하지 못한다. 만일 행동이 단지 과잉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심적인 것이 잉여적(redundant)임을 함축한다. 필자의 생각에 이 잉여성 비판이 과잉 결정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양립가능론자들은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마르쿠스의 Completeness)는 심적 인과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어떤 물리

적 사건이라도 그것의 인과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물리 세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 세계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물리 세계 밖으로 나가길 원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불투명함을 시사해주는 사고 실험이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행동이 과잉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크리슈과 와필드가 고려하는 가능세계와 다른 가능 세계를 고려해 보자. 이 새로운 가능 세계에서는 M이 없이 N이 발생한다. 그런데 N은 정의에 의해 B의 충분한 원인이기 때문에 B도 역시 그 가능 세계에서 발생한다. 결국 M이 없이도 일어날 행동은 다 일어난다. 과잉 결정 모델에 따르면 심적 원인은 잉여적이다. 물리 세계에서 심적 원인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란 없다.

아마 여기서 과잉 결정 옹호자들은 크리슈과 와필드의 전략을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즉, N은 M의 강한 수반 기저이기 때문에, N이 예화되면 M은 반드시 예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M이 없이 N이 발생하는 가능 세계는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세계에서 B의 발생 여부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물론 “만일 M없이 N이 발생했다면, B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사실적 가정문은 하찮은 의미에서 참(vacuously true)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만일 M없이 N이 발생했다면, B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도 하찮은 의미에서 참이 된다. 이는 결국 과잉 결정이 심적 원인의 잉여성을 배제하지 못함을 함축한다. 모든 물리적 사건에 대해 충분한 물리적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비물리적 원인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한들 무슨 차이를 가져 올 것인가? 결국 일어나야 할 물리적 사건은 일어나며 일어나지 않았을 물리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과잉 결정에 대한 김재권의 가장 근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되며, 이 불만은 사실 배제 논변의 핵심이다.

III. 심적 인과에 대한 물리적 모델

필자는 위에서 심적 원인에 의해 행동이 초래될 때마다 과잉 결정이 발생한다는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비판을 고찰하고, 비록 처음 두 비판이 무력하다고 해도 마지막 잉여 비판은 과잉 결정 모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양립가능론자는 과잉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혹은, 애당초 과잉 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 대응은 김재권의 배제 논변이 제기하는 도전을 정면에서 맞서기를 그만 두고 그 논변이 은연중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가정을 거부함으로써 그 도전 자체를 해소해 버리는 것이다. 과잉 결정에 대한 위의 세 번째 비판의 한 가정은 심적 사건이 물리 세계의 “진정한 원인”이 되려면, 물리적 사건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와야한다는 것이다. 마치도 당구공 X가 굴러가고 있는 데, 당구공 Y가 와서 X와 충돌하여 X의 궤도가 변화하는 것처럼, 신경 생리학적 사건들의 흐름에 의해서 B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심적 사건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B와 다른 행동, B'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벤자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을 보자. 손목 동작을 조절하는 두뇌 내부의 활동을 RP(readiness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리벳의 실험에 따르면 당신이 손목을 움직이려고 마음먹기 이전에 이미 당신 두뇌의 RP는 활성화된다. 어떤 뇌신경학자들은 이 실험이 보여 주는 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수는 없고 단지 시작된 행동을 중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

9) 많은 문헌이 있으나, Daniel Dennett의 『의식의 과학적 탐구』, 2002, 아카넷 참조. 특히 2장은 리벳의 실험과 그 함축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환원주의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 배제 논변은 비환원주의에 심각한 도전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과연 심적 사건이 물리 세계의 진정한 원인이 되기 위해서 물리적 사건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는 가정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버지에 따르면 배제 논변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보다는 그 도전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버지가 보기엔 배제 논변은 과대평가되었다. 사실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는 심적 인과가 문제시된 것은 유물론자들의 형이상학적 가정들인데, 이 형이상학적 가정들의 어떤 것도 심적 인과에 대한 우리의 믿음보다 강하지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¹⁰⁾

심적 사건이 행동에 대한 원인인가? 어떻게 당신의 생각과 결단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 행동 설명에서 도입되는 지식들에 의존할 것이다. 설명을 제공하는 법칙들은 심적 사건의 의미나 내용에 착안한다. 이를 테면, 그는 “병원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회전 했다. 만일 그가 “병원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리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행동의 의미론적 성질에 체계적으로 의존한다. 의미론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도입하는 설명체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심적 사건의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심적 사건의 인과성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적 인과에 대한 물리적 모델에 따르면, 일상적 설명 체계와 독립적으로 심적 인과를 이해하려고 한다. 즉, 몸속의 신경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근육이 조절되고, 사지가 움직이며 몸동작이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아닌가로 심적 인과의 실재성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10) Burge, T (1993), “Mind–Body Causation and Explanatory Practice”, in Heil and Mele (1993) (eds.), *Mental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버지는 심적 인과에 대한 물리적 모델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물리적 모델은 마르쿠스가 염력이론(telekinetic view of mental causation)이라고 이름붙인 견해와 동일하다.¹¹⁾ 이 이름은 아마 김재권의 저술에서 왔을지 모른다. 김재권은 심적 인과의 문제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고통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직접 조절하는 것을 “telekinesis(염력)”에 버금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였다.¹²⁾ 그러나 마르쿠스와 버지는 “왜 애당초 고통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해야하는 것처럼 기대하는가?” 라고 묻는다. 심적 인과에 대한 물리적 모델을 받아들이면 과잉 결정은 당연히 의심스럽게 보인다. 심적 인과가 성립하기 위해 물리적 사건의 연결에 어떤 간극(“gaps”)이 존재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과잉 결정은 결코 기존의 물리적 사건의 연결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음으로 따라서 과잉 결정은 실망스럽게 보인다. 우리는 심적 사건들을 도입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얘기하기도 하면서 또한 사람과 그의 생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사건이 어떻게 그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도 얘기한다. 이 두 답론은 서로에 대해 아무런 전제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거나 흡수하여야 한다고 기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마 다음과 같은 예가 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카멜레온의 색이 왜 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전혀 다른 답이 가능하다. 하나의 답은 목적론적, 진화론적 대답으로서 “색이 주변 환경과 일치하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은폐하여 생존의 확률이 증가 한다”이다. 또 다른 답은 화학적, 생리학적 대답으로서 이 러 이러한 피부의 성분 변화로 말미암아 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 두 설명은 서로 독립적이며 경쟁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가 다른 설명을 배제하지 않는다. 화학적, 생리학적 설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11) Eric Marcus, Ibid., p.42.

12) Jaegwon Kim (1996), *Philosophy of Mind*, Westview Press, p.150.

서도 목적론적, 진화론적 설명을 수용하는 데 아무런 긴장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 과정의 결과 행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러 이러한 생각과 의도가 있어 행동이 발생했다는 일상적 설명에 아무런 도전과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린 베이커와 같은 다른 철학자들도 공유한다.¹³⁾

그러나 필자는 버지 / 베이커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정적이긴 하나, 배제 논변이 그렇게 쉽게 무력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버지의 말대로 심적 사건을 도입하는 설명과 신경생리학적 설명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설명을 제공한다고 하자. 비록 그 두 설명이 서로에 대해 아무런 전제를 하지 않는 독립적인 설명들이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경생리학적 설명이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면 다른 설명이 왜 필요불가결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물리 세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존재한다면 다른 설명 체계는 독립적이건 아니건 아무런 설명적 손실 없이 제거될 수 있지 않는가? 즉, 다른 설명을 실용적인 이유에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기 때문은 아니다.

버지는 김재권의 배제 논변의 성격을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배제 논변은 심적 사건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은 심적 사건이 비물리적 실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심적 인과를 어렵게 만든다. 데이빗슨의 심성의 무법칙성도 심성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심성의 인과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배제 논변은 당신이 심성의 본질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심적 인과의 문제에 빠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성의 본질에 대한 가정

13) Lynne Rudder Baker (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Heil and Mele (1993) (eds.), *Mental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심적 인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배제 논변의 특색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빗슨의 심성의 무법칙성에 관한 다음 주장을 보자.

무법칙성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무법칙성은 엄밀하지 않은 법칙(non-strict laws)의 존재와 양립가능하며 엄밀하지 않은 법칙은 인과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가능하다. 즉, 심-물 관계에 엄밀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법칙성이 심-물 관계에 엄밀하지 않은 법칙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이 인과 관계가 엄밀 법칙을 요구하다는 인과의 법칙성원리(The Nomological Character of Causality)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사실 엄밀하지 않은 법칙을 도입하는 여러 많은 특수과학이 과연 인과 관계의 탐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인과의 법칙성원리를 포기하면 심성의 무법칙성을 받아들여 심적 인과를 허용함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에 대한 김재권의 반응이다. 김재권은 엄밀하지 않은 법칙이 인과 관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환원주의자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가능하다는 데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더라도 그 물리적 사건은 물리적 원인을 가지고 그 물리적 원인은 심적 원인과 별개임으로 비환원주의자는 기껏 과잉 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배제 논변은 우리가 심적 사건과 성질이 인과적으로 아무런 하자나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한다. 심적 사건과 성질이 인과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물리 세계에서 딱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배제 논변의 핵심이다. 따라서 배제 논변이 심적 사건과 성질 자체가 어떤 인과적 결함이

14) Jaegwon Kim, "Can Supervenience and 'Non-Strict Laws' save Anomalous Monism?", pp.25-26, in Heil, J. and Mele, A. (1993) (eds.), *Mental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있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배제 논변이 제기하는 도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버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심적 인과에 대한 물리적 모델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이해된바 배제 논변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배제 논변의 결함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4. 과잉 결정에 대한 대안

필자는 서론에서 배제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i) 만일 양립가능론이 정합적이면,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다.
 - (ii)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이 아니다.
- 따라서, 양립가능론은 비정합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ii)를 반박하려는, 즉, 과잉 결정을 옹호하려는, 양립가능론자들의 시도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과잉 결정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과잉 결정론자들이 배제 논변이 기초하고 있는 물리적 모델 가정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논의가 설득력이 있다면 양립가능론자들은 (i)을 반박하는 가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치도 과잉 결정이 양립가능론자들에게 열려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잘못임을 보이기 위해선 (i)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최소한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몫이다.

사실 (i)을 반박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¹⁵⁾

15) 과잉 결정이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i)을 반박하는 여러 방식들 간의 대립과 차이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줄고 「배제논변과 베넷」 참조.

우선 심적 사건이 초래하는 결과와 신경 생리학적 사건이 초래하는 결과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사람의 믿음이나 욕구에 의해 설명되는 행동은 “문을 열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전화를 걸다”, “기차표를 예매하다”, “선물을 하다” 등과 같다. 반면, 신경 생리학적 사건에 의해 설명되는 행동은 동작들(movements)이다. 즉 심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하게 물리적인 행동 개념이다. 행동과 동작이 동일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심적 원인은 행동을 초래하고, 신경 생리학적 원인은 동작을 초래하고 행동과 동작은 다름으로 따라서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 아니라고 하고, 행동과 동작의 분리를 통해 우리가 양립가능론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즉, (i)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 전건이 참이 되고 후건이 거짓이 되는 해석을 찾는 것이다.

우선, 심적 성질 혹은 심적 사건이 물리적 세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제는 심적 사건이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요구하고 또한 행동이 물리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이라는 것이다. 행동을 동작과 구분했기 때문에 행동이 신경생리학적 기술의 대상은 아니다. 이는 행동이 물리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는 행위는 분명히 물리적이다. 당신의 몸이 있어야 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행동은 어떤 과학 이론의 술어로 기술되지는 않으나 몸에서 발생하고, 몸을 필요로 한다는 약한 의미에서 물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리적”을 약한 의미로 해석하여 심적 사건이 물리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석하자. 그 다음, 비환원주의는 심적 사건이 어떤 과학 이론에 의해서도 서술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비환원주의는 심적 사건이 몸에 의존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심적 사건이 약한 의미의 물리적 사건임을 인정한다. 약한 의미의 물리적 사건인 행동이 약한 의미의 물리적 사건인 심적 사건을 원인으로 가지기 때문에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

리도 보존될 수 있다. 물론 폐쇄성 원리는 강한 의미의 물리적 개념을 통해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된바 폐쇄성 원리는 행동에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행동과 동작의 동일성을 부정함으로서 (i)이 거짓임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한 비판은 행동과 동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적 사건이 행동의 원인이 되기 위해선 심적 사건이 동작을 우선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당신이 돌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여신을 조각한다고 해보자. 비록 미적인 성질이 돌의 물리적 성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미적인 성질의 예화를 초래하기 위해선 물리적 성질의 예화 혹은 변화를 초래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돌을 깎고 다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동을 초래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선), 당신이 우선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여 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해서 궁극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가 실현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심적 사건은 동작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결국 과잉 결정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위 비판은 “X가 Y의 필요조건이고, S가 Y를 설명하면, S는 X를 설명 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¹⁶⁾ 이 가정은 “X가 Y의 필요조건이고, S가 X를 설명하지 못하면, S는 Y를 설명하지 못 한다”와 동등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돌이 날아가서 어떤 유리창을 부수었다고 할 때, 유리창이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음이 그 유리창의 깨어짐의 필요조건이다. 유리창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의 날아감은 유리창의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유리창의 위치는 돌이 날아오기 전 누군가의 활동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돌의 날아감이 유리창의 깨어짐을 설명

16) Frank Jackson & David Braddon-Mitchell (1996),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on*, Blackwell, p.10 참조.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¹⁷⁾

행동을 동작으로 환원시킬 경우, 행동의 인과적 역사를 거슬러 가면 심적 사건을 만나기 전에 신경생리학적 사건들을 먼저 만날 것이다. 예를 들어, 얼굴의 찡그림을 얼굴 근육의 어떠한 움직임 정도로 간주하면, 얼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인과적 역사를 거슬러 가면 당연히 고통보다는 근육조절 신경 연결망을 먼저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여기서 벌써 고통의 인과성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고통이 어떻게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가? 유리 켈러가 염력을 사용하여 아무런 물리적 매체 없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과 같이 고통과 찡그림의 관계도 신비하게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내적 기체에 개입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경 세포의 내부를 침투하여 전기적 성질을 바꾸어 놓는가? 심적인 것이 신경생리학적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사 염력 등을 인정하여 심적 사건이 신경 생리학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한 들, 기껏 과잉 결정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배제 논변의 핵심이다. 즉, 심적 인과에 대한 문제의 씨앗은 과잉 결정 이전에 이미 뿌려졌다. 행동을 동작, 근육의 수축과 이완, 등과 동일시할 때 이미 심적 인과는 심각히 손상되었다.

행동과 동작의 동일시가 배제 논변에서 가지는 핵심적 위상을 고려할 때, 행동과 동작은 동일시하면서 배제 논변은 저항하려는 시도는 자기 모순적이다.

17) 혼스비는 현대 물리주의의 저변을 흐르는 잘못된 행동 개념을 비판하였다. Jennifer Hornsby (1997), *Simple Minded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혼스비는 환원적 행동주의가 가정하는 행동 개념을 비판하고 라일의 행동 개념을 옹호한다. 어떤 사람이 “호수의 얼음이 약하다”는 믿음에 의해 설명되는 행동의 예로서 라일은 “조심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한다”, “호수 가에 머물러 있다”, “스케이트를 조심스레 타다” 등이다. 혼스비는 심적 사건이 초래하는 행동이란 이런 것들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필자는 혼스비가 강조하는 것이 강조되어 마땅한,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행동과 동작의 분리를 통한 접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¹⁸⁾ 왜냐하면, 비록 그러한 접근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i)을 반박하는 길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행동과 동작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양립가능론은 과잉 결정을 필하지 않는다.

행동과 동작을 동일하다고 하고, 행동 B가 심적 원인 M과 신경생리학적 원인 N이라는 두 충분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과잉 결정이 둘 이상의 충분한 원인을 필요조건으로 한다면 심적 인과는 과잉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독립적 과잉 결정과 의존적 과잉 결정의 구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심적 인과가 과잉 결정이더라도 최소한 독립적 과잉 결정은 아님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과잉 결정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독립적 과잉 결정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돌이 유리창을 깨는 과잉 결정의 교과서적 사례를 고려해 보면, 분명히 그러한 사례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 우연일 수밖에 없는 사건처럼 보인다. 따라서 양립가능론자들은 심적 인과를 어떤 의존적 과잉 결정의 한 사례로 분석하여 최소한 문제시 되는 독립적 과잉 결정과 거리를 두고자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행동과 동작이 동일하다고 해도 심적 인과가 최소한 독립적 과잉 결정을 함축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M과 N이 B의 “충분한 원인”이라는 말은 M이 없이 N 혼

18) 예를 들어, 드레츠키는 행동을 내적 상태에 의해 유발된 동작이라는 복합적 인과 사태로 분석한 후, 내적 상태의 통사론적 성질은 동작을 설명하나 내적 상태의 의미론적 성질은 복합적 인과 사태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Explaining Behavior* 참조. 이는 이중 피설명항 전략(dual-explanandum strategy)의 한 예이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드레츠키의 이중 피설명항 전략을 비판하였다. 줄고 「물리주의와 의미의 설명적 기능」 참조. 물론, 드레츠키의 이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중 피설명항 전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B를 유발할 수 있고, N없이 M 혼자 B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 점은 M과 N이 서로 독립적이던 의존적이던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의존적 과잉 결정 역시 2장의 마지막 잉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양립가능론자들이 심적 인과를 최소한 독립적 과잉 결정과 차별화시켜 의존적 과잉 결정의 한 사례로 보더라도 여전히 과잉 결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적용된다.¹⁹⁾

여기서 “충분한 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원인이 보다 **느슨한**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떤 배경 조건들의 존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냥을 그으면 불이 난다고 할 때, 성냥이 말라 있고, 주위에 산소가 있으며, 등의 조건을 가정한다. 이러한 배경 조건들이 성립할 때, 성냥을 그으면 불이 난다. 반면 “충분한 원인”을 **강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성냥을 그음이 불이 나는 사건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다. 성냥의 그음, 산소의 존재, 성냥의 건조성, 등의 조건들의 총합만이 강한 의미에서 충분한 원인이 된다.

충분한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사용을 염두에 두고 M과 N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N이 B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라고 할 때, 어떤 배경 조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N이 두뇌 어떤 부분의 신경 섬유 활성화라고 하고, B를 팔이 올라감이라고 하자. 과학자가 N이 B의 충분한 원인이라고 할 때, 그는 어떤 배경 조건들을 가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N으로부터 B에 이르는 신경 연결망이 손상되지 않았고, 팔이 존재하며, 등의 배경조건들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다. 만일 N이 통속의 두뇌(the brain in a vat)에서 발생한다면 당연히 B는 발생하지 않는다. N이 B를 유발하기 위

19) 이 부분의 논의는 베넷의 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Karen Bennett (2003), “Why the exclusion problem seems intractable, and how, just maybe, to tract it”, *Nous* 37:3, 471–497. 그렇다고 해서 베넷의 견해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참고 『배제논변과 베넷』 참조.

해서 성립되어야할 배경조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자. 그 다음 우리는 M을 바로 그러한 배경조건에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반사실적 조건문은 참이 아니다.

(O) 만일 M이 없이 N이 발생한다면, B도 여전히 발생한다.

M이 변하면, 혹은 M이 없어지면, N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N이 B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조건이 변한다. 따라서 B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O)는 거짓이다. 그러나 (O)의 거짓이 N이 B의 충분한 원인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느슨한 의미에서의 충분한 원인은 여전히 성립한다.

(O)의 거짓이 의미하는 것은 M이 잉여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의존적 과잉 결정은 2장의 잉여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

5. 결론

필자는 2장에서 과잉 결정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과잉 결정 모델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애당초 문제 자체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극단적 반응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과잉 결정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그러한 반응이 정당할 수 있으나 4장에서 과잉 결정 모델에 대한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안들이 각각 더 상세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둘 이외에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도 계속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과잉 결정이외의 대안이 열려있음은 분명히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즉,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양립가능론자들이 과잉 결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배제 논변에 대항하여 왔는데 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립가능론자들은 비직관적인 과잉 결정

에 호소해 가면서 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 이는 스스로를 터무니없이 강하게 구속하는 것이다. 오히려 심적 인과가 왜 과잉 결정이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이 배제 논변에 대한 더욱 만족스러운 대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윤보석, 『물리주의와 의미의 설명적 기능』, 철학연구, 52권, 2001.
- 윤보석, 『배제논변과 배넛』, 철학, 91권, 2007.
- Baker, Lynne Rudder (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Heil and Mele (1993) (eds.), *Mental Causation*.
- Bennett, Karen (2003), “Why the exclusion problem seems intractable, and how, just maybe, to tract it”, *Nous* 37:3, 471–497.
- Burge, Tyler (1993), “Mind–Body Causation and Explanatory Practice”, in Heil and Mele (1993) (eds.), *Mental Causation*.
- Crisp, Thomas and Warfield, Ted (2001), “Kim’s Master Argument”, *Nous*, 35:2, 304–316.
- Dennett, Daniel (2002). 『의식의 과학적 탐구』, 아카넷.
- Dretske, Fred (1988), *Explaining Behavior*, MIT Press.
- Heil, John, and Mele, Alfred (1993) (eds.), *Mental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Hornsby, Jennifer (1997), *Simple Minded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son, Frank & Braddon–Mitchell, David (1996),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on*, Blackwell.
- Kim, Jaegwon (1993). “Can Supervenience and ‘Non–Strict Laws’ save Anomalous Monism?”, pp.25–26, in Heil, J. and Mele, A. (1993) (eds.), *Mental Causation*.

- Kim, Jaegwon (1993), *Supervenience and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aegwon (1996), *Philosophy of Mind*, Westview Press,
- Kim, Jaegwon,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Marcus, Eric (2005), “Mental Causation in a Physical World”, *Philosophical Studies*, Vol. 122, No. 1.
- Schaffer, Jonathan (2003), “Overdetermining Causes”, *Philosophical Studies* 114.
- Sider, Theodore (2003), “What is so bad about overdetermina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ABSTRACT

Is Mental Causation a Case of Overdetermination?

Yoon, Bo-Suk

A number of philosophers have recently appealed to the notion of overdetermin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worry that the mental does not make a causal difference in the physical world. I am inclined to think, however, that mental causation is not a case of overdetermination. There are several objections against the identification. The defender of overdetermination can probably handle some of them, but not all. Furthermore, I will argue that mental causation needs not be a case of overdetermination: overdetermination is not the only option left for a non-reductivist who wants to accept both the causal efficacy of the mental and the causal closure of the physical world.

Keywords: mental causation, overdetermination, exclusion argument, Jaegwon Kim, closure principle, compatibilism